

파주시 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3-250
번호	

제출년월일 : 2004. 5. 19.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제3땅굴 도보관람로의 신설로 도보를 이용한 제3땅굴의 관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 사용료에 도보를 이용한 적경도 관람료를 포함시키고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셔틀 엘리베이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사용료를 인상·재조정하여 현실화시킴과 동시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객에 대한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 수입금사용제한에 있어 수입금 사용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에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8조).
- 종전에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제3땅굴을 관람하던 것을 제3땅굴 도보관람용 역경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를 조정 징수하고자 개정함(안 별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금 액(원)	금 액(원)
셔틀엘리베이터	일 반 인		2,000	3,000
	어린이·청소년		1,500	2,500
시 설 사 용 료	개 인	일 반 인	3,000	4,500
		어린이·청소년	2,000	3,000
	단 체	일 반 인	2,000	3,000
		어린이·청소년	1,500	2,000

파주시 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유공자

제8조중 “관광개발사업”을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관광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은 제3땅굴 도보관람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원)
서플엘리베이터	일 반 인		3,000
	어린이·청소년		2,500
시 설 사 용 료	개 인	일 반 인	4,500
		어린이·청소년	3,000
	단 제	일 반 인	3,000
		어린이·청소년	2,000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생략) ②(생략)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국가유공자</u> 8. (현행과 같음)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u>관광개발사업</u> 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u>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관광개발사업</u> 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u>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u>	(별표) <u>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u>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금액(원)</th></tr><tr><td rowspan="2">서틀 엘리베이터</td><td>일반인</td><td>2,000</td></tr><tr><td>어린이·청소년</td><td>1,500</td></tr><tr><td rowspan="4">시설사용료</td><td rowspan="2">개인</td><td>일반인</td><td>3,000</td></tr><tr><td>어린이·청소년</td><td>2,000</td></tr><tr><td rowspan="2">단체</td><td>일반인</td><td>2,000</td></tr><tr><td>어린이·청소년</td><td>1,500</td></tr></table>	구분		금액(원)	서틀 엘리베이터	일반인	2,000	어린이·청소년	1,500	시설사용료	개인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000	단체	일반인	2,000	어린이·청소년	1,500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금액(원)</th></tr><tr><td rowspan="2">서틀 엘리베이터</td><td>일반인</td><td>3,000</td></tr><tr><td>어린이·청소년</td><td>2,500</td></tr><tr><td rowspan="4">시설사용료</td><td rowspan="2">개인</td><td>일반인</td><td>4,500</td></tr><tr><td>어린이·청소년</td><td>3,000</td></tr><tr><td rowspan="2">단체</td><td>일반인</td><td>3,000</td></tr><tr><td>어린이·청소년</td><td>2,000</td></tr></table>	구분		금액(원)	서틀 엘리베이터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500	시설사용료	개인	일반인	4,500	어린이·청소년	3,000	단체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000
구분		금액(원)																																					
서틀 엘리베이터	일반인	2,000																																					
	어린이·청소년	1,500																																					
시설사용료	개인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000																																				
	단체	일반인	2,000																																				
		어린이·청소년	1,500																																				
구분		금액(원)																																					
서틀 엘리베이터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500																																					
시설사용료	개인	일반인	4,500																																				
		어린이·청소년	3,000																																				
	단체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000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제3땅굴 도보관람로의 신설로 도보를 이용한 제3땅굴의 관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도보를 이용한 역갱도 관람료를 포함시키고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셔틀 엘리베이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사용료를 인상·재조정하여 현실화시킴과 동시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객에 대한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 수입금사용제한에 있어 수입금 사용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에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8조)
- 종전에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제3땅굴을 관람하던 것을 제3땅굴 도보관람용 역강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를 조정 징수하고자 개정함. (안 별표)

구		현		개
		행		정(안)
		금		금
		액(원)		액(원)
셔틀엘리베이터	일 반 인		2,000	3,000
	어린이·청소년		1,500	2,500
시설사용료	개 인	일 반 인	3,000	4,500
		어린이·청소년	2,000	3,000
	단 체	일 반 인	2,000	3,000
		어린이·청소년	1,500	2,000

3.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제3땅굴 도보관람로 신설에 따른 제반 관광 환경의 변화는 물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셔틀엘리베이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용료의 인상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 재조정하여 현실화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 제3땅굴을 포함한 안보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자해 왔고 투자비용에 비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과 소요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 재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상황임.
- 따라서 금번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차원에서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와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는 수입금의 사용범위를 확대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수입금의 사용범위를 관광개발사업에만 한정해오던 것을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할 있도록 수입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수입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안 별표 에서는 제3땅굴 도보관람로 신설에 맞춰 제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징수하고자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구체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셔틀버스와 엘리베이터 사용의 경우 기존 8,700원에서 11,200원으로 약 28,7%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단체의 경우 동일한 시설이용 시 약 50%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가 안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한 만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제반소요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시설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자 것임.
- 금번 시설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시에서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인상 규모(인상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별표의 단체관람의 경우 단체관람의 기준을 현행 30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소한 10인- 15인 규모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단체관람의 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地方自治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地方財政法》

제26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